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대상자에게 취업지원 종료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,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같은법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4. 4. 12.

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



-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 통지
- 근 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9조,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26조
-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번	성명	생년월일	송달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	
1	사O섭	1975.3.23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 결정	-3,4회차 연속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미제출 -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 미달	① 취업지원서비스 종료(중단) ② 종료 결정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취업지원 신청 제한(3년간 재참여 제한)	-연속2회 미제출 및 연락두절 -폐문	칠곡군 금오대로6길 29-2 (이하생략)

4. 공고기간: 2024.4.12. ~ 2024.4.26.(15일간)

5. 기타사항은 구미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권영순(Tel. 054-440-3346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